

# 보상협의공고문

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103호

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“한강 고양지구 하천정비사업”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,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수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시행자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)
2. 사업의 명칭 : 한강 고양지구 하천정비사업
3. 기간 및 장소
  - 가. 기 간 : 공고기간(2020. 9. 15. ~ 2020. 9. 29.)
  - 나. 장 소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(☎ 02-2110-6762, 김정만 주무관)
4. 보상시기·방법 및 절차
  - 가. 보상금액은 소유자(관계인) 확인 후 개별통지, 소유자 등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
  - 나. 협의성립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현금지급(계좌입금)
    -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 해지 필요
    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불가
5. 토지 및 물건의 표시 : 붙임내역 참조

※ 협의기간 내 협의불성립 또는 협의불응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하여 재결 후 보상금 지급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법원에 공탁 예정

붙임 : 보상협의 공고대상목록 1부.

2020. 9. 14.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[인]

